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3년 4월 일 (제319회)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4월 일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3년 4월 일

발 의 자 : 이수완 · 정 현 · 황규철 · 권기수 ·
김도경 · 유완백 · 윤성옥 의원(7명)

1. 제안 이유

-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주요정책 방향을 규정한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2011.5.19),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지식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 나.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다.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안 제10조)

3. 조례안 : 불 임

4.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의2. “신지식재산”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충청북도 지식재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전략
4.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특성화 방안
7.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식재산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충청북도 지식재산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3.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산업과장이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진흥계획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컴퓨터프로그램,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표·상호와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배치설계를 말한다.</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p> <p>1의2. “신지식재산”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p>	<p>2. “지식재산권”이란 법제3조 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p>
<p>3. ~ 5. (생략)</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도민 모두에게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진흥계획의 내용)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4조(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충청북도 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전략 4.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특성화 방안

현행	개정안
<p>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 등을 대행하게 한다.</p> <p>1. 제3조제1항과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p>	<p>7.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제10조(지식재산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p>

현행	개정안
<p>2.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p>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p>	<p>2.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p> <p>3. 충청북도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p> <p>2.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p>

현행	개정안
	<p>3.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p> <p>4.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현행	개정안
	<p>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산업과장이 된다.</p> <p>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관계 법령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11.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